

1. 개정이유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미이행 시 환경부 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도록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2022.6.10. 공포, 2023.6.1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 받으려고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절차, 측정 분석 전문기관의 평가항목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 정비(안 제10조, 안 제11조의2, 안 제14조)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 조문 삭제 및 조항 변경

나.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안 제14조의2, 안 별표6의2)

1)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세부기준과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험·분석 능력 평가항목, 기준 절차 등을 마련

다. 배출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배출사업자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의 세부 행정처분기준을 신설

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관련 서식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서식(별지 제4호의2서식)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서식(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을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 이라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을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빙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한다)
2. 측정분석 업무수행 계획서(수수료,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정도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측정분석능력 입증 서류(검출한계, 정확도, 정밀도, 재현성, 실질시료에 대한 측정분석자료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영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측정분석 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변경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시험·분석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지정항목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6의2와 같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4호의3서식의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못 쓰게 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제2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6조 제3항	사용중지 20일	사용중지 40일	사용중지 60일
------------------------------------	------------	----------	----------	----------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분석 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한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본다.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
(제14조의2제5항 관련)

1. 평가항목

- 가. 잔류성오염물질 시험·분석 숙련도
- 나. 잔류성오염물질 시험·분석 운영관리

2. 평가기준

- 가. 잔류성오염물질 시험·분석 숙련도

평 가 기 준	배점
1) 실험실 준비사항에 대한 평가	10
2) 전처리 과정에 대한 평가	20
3) 기기분석과정에 대한 평가	25
4) 검량 및 정량방법에 대한 평가	25
5) 분석결과에 대한 평가	20

- 나. 잔류성오염물질 시험·분석 운영관리

평 가 기 준	배점
1)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적절성	20
2) 보유시설의 보유현황 및 적절성	15
3) 측정분석 장비의 보유현황 및 적절성	15
4) 시료채취 및 보관의 적절성	10
5) 표준물질 및 시약(초자)의 보유현황 및 적절성	20
6) 자료의 보관 및 운영관리의 적절성	20

3. 평가방법

- 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관련 공무원 포함 3인 이상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나. 제1호가목 및 나목의 평가항목별로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세부 평가기준별로 5단계(매우 좋음, 좋음, 보통, 불량, 매우 불량)로 평가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세부 평가기준별로 주어진 배점을 배분한다.

* 매우 좋음: 100%, 좋음: 80%, 보통: 60%, 불량: 40%, 매우 불량: 20%

- 다. 나목에서 구한 개별 평가팀원의 평가 점수를 합하여 전체를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를 최종 평점으로 한다.

라. 평가항목별 각각의 평점이 7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하며, 두 항목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최종 결과를 적합으로 판정한다.

4.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를 보다 공정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 지정
[] 변경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변경 지정 10일)
------	-----	------	----------------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분석책임자		
	지정신청항목		
	변경사항(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 제14조의2제3항

[] 지정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을 신청합니다.
[] 변경지정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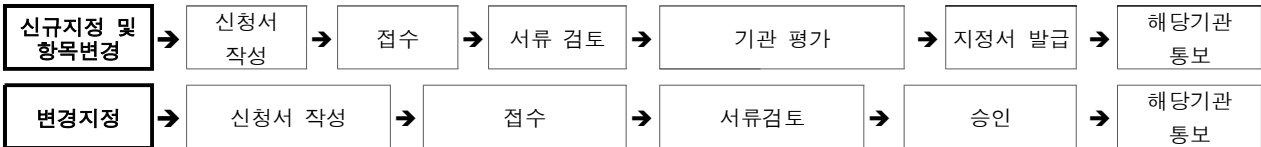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빙하는 서류 나. 측정분석 업무수행 계획서 다. 측정분석능력 입증 서류 2.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 가.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2.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지정번호 제 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지정항목:

위 기관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처분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농도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중 잔류성오염물질 <u>측정기관으로</u>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보건환경연구원	3. ----- -----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제11조의2(행정처분의 공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u>법 제16조제3항</u> 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의2(행정처분의 공표) --- ----- <u>법 제16조제4항</u> ----- ----- ----- -----.

제1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 및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삭제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중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보건환경연구원

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③ (생략)

④ 배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측정기관에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에 대상시설 공정도를 첨부하여 측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측정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관의 인정절

제1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삭 제>

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 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빙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한다)

2. 측정분석 업무수행 계획서(수수료,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정도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측정분석능력 입증 서류(검출한계, 정확도, 정밀도, 재현성, 실질시료에 대한 측정분석

자료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영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측정분석 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변경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시험·분석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지정항목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6의2와 같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4호의3서식의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⑦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못 쓰게 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